

세 법

【총평】 작년까지의 7급 세법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 자체의 난이도 보다는 9급에 비해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관례와 계산문제의 요소가 일부 가미되는 정도였으나, 이번 2019년 7급 세법은 마치 세법과 회계학의 필수과목 전환이라는 전제와 함께 9급과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 난이도와 문제수준을 고려한 출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형식적으로도 그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으며, 법률 자체의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국세기본법에서는 지엽적인 부분을 법률 원조문 그대로의 발제를 통해 내용만 대충 알고 있는 수험생은 정답을 고르기 힘들도록 출제가 되었고, 법인세법의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공부와 연습이 되지 아니한 수험생은 맞추기 힘든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응용과 해석까지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역시 이전 시험처럼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가려낼 수 있는 명백한 (하)수준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제문항은 국세기본법 7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 법인세법 4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출제가 되지 아니한 1문제가 국세기본법으로 출제된 변화가 있었으며, 20문항의 난이도를 본 강사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상) 5문항, (중) 8문항, (하) 7문항의 구성으로, 그동안의 7급 세법 시험의 평균적 수준보다 (하)수준의 문항이 (중), (상)수준의 문항보다 적은 수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출제의 추세를 수험생들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은 단순암기가 아닌 지문의 해석과 원문규정의 깊이 있는 검토와 숙지를 기준으로 한 체계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7급 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9급 수준의 내용을 단단하게 보장 한 후 해당 규정에 추가적인 지엽적 규정을 덧붙일듯이 보완하는 방향이 7급 세법을 대비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공당기고시학원 세법전임 이진욱 세무사)

문 1.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 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하)

- ①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② 원천징수한 법인세
- ③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 ④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정답> ①

해설> 납기전징수의 대상 국세는 다음과 같은 확정국세에 한정된다.

- ① 납세고지를 한 국세
- ②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 ③ 원천징수한 국세
- ④ 납세조항이 징수한 국세
- 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및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동확정국세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문 2.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하)

- ①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 ④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불복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매는 제한되지만 압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한다(집행부정지원칙).
- ③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국기법 제 79조 ②, 불이익변경금지)
- ④ 보정기간은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여야 한다.
- ②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는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납세자의 재산(양도담보재산 제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④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설정이 된 경우에 한정하여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문 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가장 큰 금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문 5.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②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 ③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문 6. A은행은 저장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장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됨) 1억 7천5백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류업을 하는 채무자 甲의 주택을 강제경매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은 다음과 같다. 甲의 주택매각대금이 3억 원일 경우 甲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

-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장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 ① 0 원
- ② 1천만 원
- ③ 1천5백만 원
- ④ 2천만 원

정답> ④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함께 당해세(해당 재산에 직접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담보채권의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담보채권에 우선변제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비용,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대상임금채권을 배당한 후 남은 금액(1억 7천5백만원)을 한도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문 7. 국제기본법령상 국제거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

- ① 「국제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②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제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④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제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는 100분의 60을 가산율로 적용한다.

문 8. 「국제기본법」의 규정이 「국제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하)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 ② 소급과세의 금지
- ③ 실질과세
- ④ 납세의무의 승계

정답> ②

해설> 세법적용원칙 중 하나인 소급과세원칙은 다른 세법이 국제기본법에 우선할 여지가 없다. 즉, 국제기본법이 다른 세법에 항상 우선하는 규정이며, 다른 세법이 국제기본법에 우선하는 특례(17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9. 세무공무원 甲이 국제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중)

- 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음)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유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 ② 체납자 B의 퇴직금 총액(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이 1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징수유예를 받은 C의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불가능하다.
- ④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납기전 징수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압류의 대상이 된다.
- ③ 징수유예 중에도 참가압류는 가능하다.
- ④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료제공규정을 적용한다.

문 10.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제부과의 원칙은? (하)

- ① 실질과세의 원칙
- ② 신의성실의 원칙
- ③ 근거과세의 원칙
-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정답> ①

해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문 11.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중)

- ① 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500,000원을 할인하여 9,5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 ② 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이 주문한 수준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1,000,000원을 에누리하여 9,0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000,000원이다.
-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상당액 500,000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장기매출채권, 9,500,000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 ④ 사업자가 취득 후 40개월 사용한 차량 A(취득원가 20,000,000원, 장부가액 14,000,000원, 시가 10,000,000원)를 유사 차량 B(시가 12,000,000원)와 교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량 A의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다.

정답> ③

해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해당 공급시마다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므로 기간의 고려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총 공급가액 합계액은 10,000,000원이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다면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도 옳은 접근이다.

문 12. 내국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에 따른 2019년도 총급여액은? (상)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36,000,000원(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 －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 ① 42,600,000원 ② 43,800,000원
③ 45,000,000원 ④ 50,000,000원

정답> ③

해설> 총급여액 : ㉠+㉡+㉢+㉣+㉤+㉦ = 45,000,000원

- ㉠ 봉급: 36,000,000원
㉡ 인정상여: 0원(2018년 귀속분)
㉢ 식사대: 2,400,000(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
㉣ 차량운전보조금: 1,200,000원(월 200,000만원×12개월 = 2,400,000원 비과세)
㉤ 자녀보육수당: 2,400,000원(월 100,000만원×12개월 = 1,200,000원 비과세)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생산직근로자가 아니므로 비과세 없음)
㉧ 주택구입자금 무상대여이익: 1,000,000원

문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음 항목은 거주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상)

- 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 ㄷ. 선급비용
-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 ㄱ. 위반에 대한 제재금액으로서 징벌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ㄴ. 초과인출금 관련이자로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ㄷ. 차기 이후의 필요경비를 미리 지급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ㄹ.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예수금의 감소로 처리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에 공급대가로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

문 1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상)

- 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③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 ④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①

해설>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인령 제19조의 2 ④).

문 1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상 해당 요건은 충족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및 감가상각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상)

- ①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③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 ④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답> ②

해설> 즉시상각특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감가상각시부인 없이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문 16.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중 5%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상)

- ① 5천만 원 증가 ② 4천만 원 증가
③ 3천5백만 원 증가 ④ 2천5백만 원 증가

정답> ③

해설>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및 이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으로서 A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의제배당액: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익금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5천만원 × 30%* = 1천5백만원
* 비상장법인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의 익불
③ 각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액: ① - ② = 3천5백만원 증가

문 17.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중)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④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60일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 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

정답> ④

해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후 발급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된다.

문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④ 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문 1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따른 해당 요건과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중)

- ①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 ④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본다.

문 20.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기타소득의 비과세,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중)

- ①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이 대체된 것임)
- ③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④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정답> ②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 시점이 지급시점 이후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